

의안 번호	1192
----------	------

울산광역시 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
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연월일 : 2015. 11. 20.(금)
- 나. 제출자 : 중구청장
- 다. 위원회회부 : 2015. 11. 23.(월)
- 라. 위원회심사 : 2015. 12. 8.(화)

2. 개정이유

2015년 자치법규 일제정비계획에 따라 관련규정을 상위법에 부합토록 개정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시 제출서류 정비(안 제13조제1항)
 -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8조의1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출 서류 중복내용 삭제
- 나.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 정비(안 제13조제5항)
 -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 등록 제한
- 다. 수수료 근거규정 신설(안 제13조제6항 및 제7항)

4. 근거법규

- 가.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8조 및 제48조
- 나. 「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」 제5조 및 제26조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
 - 2015년 자치법규 일제정비계획에 따라 관련규정을 상위법에 부합토록 개정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
-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 규정을 검토한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

< 관 계 법 령 >

□ 유통산업발전법

제8조(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)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 등록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 <개정 2013.3.23.>

② 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가 미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.

③ 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[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개설등록(매장면적을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) 당시의 매장면적보다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]을 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. <개정 2014.3.18.>

④ 제3항에 따른 등록 제한 및 조건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13.1.23.]

[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해 제8조제1항, 제8조제2항 중 준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부분, 제8조제3항, 제8조제4항은 2020년 11월 23일까지 유효함]

제48조(수수료) ①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자치시·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. <개정 2013.3.23.>

② 삭제 <2015.11.20.> [전문개정 2013.1.23.] [시행일 : 2016.5.21.] 제48조

□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

제5조(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등) ① 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(이하 "대규모점포등"이라 한다)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·시장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7조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·군수 또는 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6.2.23, 2006.6.30, 2009.10.14, 2011.1.18, 2012.10.5, 2013.4.23, 2013.7.22>

1.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

가. 사업의 개요(개설자·사업추진일정 및 영업개시예정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)

나. 건축물의 위치도 및 구조

다. 사업의 규모(대지면적·건축물면적·매장면적·점포수 및 종사자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)

라. 시설의 명세 및 점포의 배치도(분양·직영 및 임대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)

마. 업종의 구성

바. 운영·관리계획(기구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)

사. 재무구조

2.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상권영향평가서

가. 요약문

나. 사업의 개요 : 개설자, 개설지역, 추진일정 및 영업개시예정일, 대규모점포등의 종류, 매장면적(m²)

다. 상권영향분석의 범위 : 공간적 범위, 위치도 또는 지형도

라. 인구통계 현황 분석 : 거주인구수와 세대수, 거주인구 연령분포와 소득분포, 유동인구 현황 및 종합적 분석

마. 기존 사업자 현황 분석 : 대규모점포, 준대규모점포, 전통시장, 전통상점가, 소매점 현황 및 종합적 분석

바. 상권의 특성 분석 : 상권 내 주거형태, 교통시설, 집객시설, 그 밖의 사업자 현황 및 종합적 분석

사. 상권영향기술서

3. 지역협력계획서(지역 상권 및 경제를 활성화하거나 전통시장 및 중소기업과 상생협력을 강

4 (제181회-복지건설위제4차부록)

화하는 등의 지역협력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말한다)

4.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(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외의 서류를 말한다)

5.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

② 제1항제2호의 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. <신설 2013.7.22>

③ 제1항제3호의 지역협력계획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은 배제하여야 한다. <신설 2013.7.22>

1. 불공정 경쟁이나 부정 거래를 유발할 수 있는 사업

2. 소비자후생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사업

3. 지역 사업자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주거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방해하는 사업

④ 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말한다. <개정 2006.2.23, 2006.6.30, 2011.1.18, 2013.7.22, 2014.8.13>

1. 법인의 명칭·대표자의 성명·소재지(개인의 경우에는 주소지를 말한다) 및 상호

2. 개설등록(매장면적을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) 당시 매장면적의 10분의 1 이상의 변경

3. 업태 변경(대규모점포만 해당한다)

⑤ 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개설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증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되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등록의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06.6.30, 2011.1.18, 2013.4.23, 2013.7.22, 2014.8.13>

1. 점포의 소재지 변경

2. 매장면적이 개설등록(매장면적을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) 당시의 매장면적보다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변경

3. 업태 변경(대규모점포만 해당한다)

⑥ 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또는 개설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증(대규모점포등의 개설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뒤쪽에 그 사실을 기재한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증)을 교부하여야 하며, 별지 제3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개설(변경)등록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개설(변경)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1.18, 2013.4.23, 2013.7.22>

⑦ 제1항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. 다만, 제2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. <신설 2006.6.30, 2009.10.14, 2011.1.18, 2011.10.19, 2012.10.5, 2013.4.23, 2013.7.22>

1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)

2. 주민등록표 초본(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하며,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)

3. 토지 등기사항증명서

4. 건물 등기사항증명서

[제목개정 2011.1.18]

제26조(수수료) ① 법 제48조제1항에서 "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범위"라 함은 10만원을 말한다. <개정 2006.6.30, 2008.3.3, 2013.3.23, 2013.4.23>

② 법 제48조제2항에서 "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범위"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신설 2006.6.30, 2008.3.3, 2013.3.23, 2013.4.23, 2013.12.12>

1. 물류설비인증인 경우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.

2. 성능검사기관 또는 인증기관의 지정인 경우에는 50만원을 말한다. 다만, 인증심사 또는 인증검사업무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10만원을 말한다.

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[별지 제1호서식] <개정 2013.7.22>

[] 대규모점포
[] 준대규모점포 **개설(변경)등록 신청서**

※ 바탕색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(앞쪽)

	접수일	발급일	처리기간 20일(영 제6조의5제2항에 따른 의견청취시 30일)
--	-----	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신청인	①법인명	②법인등록번호
	③대표자 성명	④생년월일
	⑤주소 (전화번호:)	

⑥상호	⑦업태
⑧소재지 (전화번호:)	

신청 내용	규모	⑨건물 연면적 (대지면적)	m ² ()	⑩건물 면적	지하 층, 지상 층	
		⑪영업장 면적	m ²	⑫영업장 규모	지하 층, 지상 층	
		⑬매장 면적	계 m ²	판매 면적	용역제공 면적 m ²	
		⑭공동사용시설 면적	m ²			
		⑮운영방식	계 m ²	직영 m ² (%)	임대 m ² (%)	분양 m ² (%)
		⑯개설자 소유 매장면적	m ² (%)		⑰점포수	
		⑱영업개시 예정일				

등록증 분실사유

변경등록신청 시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.

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8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부터 제5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의 개설(변경)등록을 신청합니다.

신청인

년 월 일
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210mm×297mm(백상지 80g/m²)

6 (제181회-복지건설위 제4차부록)

(뒤쪽)

첨부서류	개설면허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1부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사업의 개요(개설자·사업추진일정 및 영업개시예정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) 건축물의 위치도 및 구조 사업의 규모(대지면적·건축물면적·매장면적·점포수 및 종사자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) 시설의 명세 및 점포의 배치도(분양·직영 및 임대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) 업종의 구성 운영·관리계획(기구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) 재무구조 상권영향평가서 1부(사업개요, 상권영향분석 범위, 인구통계 현황 분석, 기존 사업자 현황 분석, 상권의 특성 분석, 상권영향기술서를 포함합니다) 지역협력계획서 1부(지역 상권 및 경제 활성화, 전통시장 및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강화 등 지역협력 세부사업별 추진배경, 사업내용, 추진계획, 기대효과를 포함합니다)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(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외의 서류를 말합니다)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	수수료 10만원 (변경등록시 없음)
	변경등록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증 원본(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서란에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) 점포의 소재지변경,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변경, 업태변경(대규모점포만 해당)의 경우에는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각 1부 	
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·구청장 확인사항	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 주민등록표 초본(개인인 경우만 해당하며,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)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	

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·구청장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·구청장 확인사항 중 제2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2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신청인 주민등록번호: _____

신청인 _____

(서명 또는 인)

작성방법

- 개인의 경우 ①란·②란은 적지 않습니다.
- ①영업장 면적은 매장 면적과 공동사용시설 면적(매장의 이용과 직접 관련된 층의 계단·승강기·연결통로, 관리사무실, 소비자피해보상센터 및 고객휴게실 등)을 합한 면적을 적습니다.
- ③매장면적은 상품의 판매에 이용되는 장소의 면적을 의미합니다.
-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변경된 항목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처리절차

